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5 월호에서 계속)

제9조(시설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결혼상담요원 등) ① 결혼상담소에는 결혼상담을 하는 자(이하 "결혼상담요원"이라한다)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결혼상담요원은 결혼상담에 필요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 또는 장의사 영업에 있어서는 영습을 하는 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준칙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영업장소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례허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점소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는 권고·제몽유인물을 사용자에게 배부할 것.
4. 허가증 및 임대료, 수수료 또는 물품판매대금의 금액을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된 금액이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6. 영업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에 협조할 것.
7. 결혼예식장 사용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혼인 당사자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소, 성명을 명기할 것. (결혼예식장 영업에 한한다.)
8. 결혼예식에 지장이 없도록 결혼예식장의 1회 사용시간은 적어도 50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줄 것. (결혼예식장영업에 한한다.)
9. 혼인신고서용지 또는 사망신고서용지를 비치하고 신고의 제출에 편의를 제공할 것. (결혼예식장 영업과 장례식장 영업에 한한다.)
10. 영습을 하는 경우에는 영습을 하는 자로 하여금 위생복을 착용하게 할 것. (장례식장 영업과 장의사 영업에 한한다.)

제12조(허가제한의 제외) 법 제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또는 그 부대

시설"이라함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호텔영업의 영업장소 또는 그 부대시설(관광사업법에 의한 특등급이상의 관광호텔영업장소 또는 그 부대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한다), 중앙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이하 "중앙실천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이하 "지방실천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실천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중앙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지방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조사 연구
2. 가정의례준칙의 심의
3.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실천위원회 및 지방실천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 계몽
2.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 건의
3. 기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

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
리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
행한다.

제17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9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기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
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경비부담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중 공
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과 가정의배준적의 보급
실천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의례식장등의 시설기준

1. 결혼예식장의 시설기준

가. 예식실마다 신랑대기실과 신부대기실을각
각 3평방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나. 예식실마다 복도에 면한 측에 폭 90센티
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2개이상 설치할 것.

다. 예식실이 복도의 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
는 그 복도의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예식실에는 환기, 채광, 보온 및 방화시설
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소에는 예식실의 좌
석수를 감안하여 남, 여별 화장실을 설치할
것.

광 주 부 화 장



바 브 콕

B-300V



DEKALB

와렌 G



하 바 드

사무실

전남 광주시 서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